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WTO體制下的
中國 關稅制度에 관한 研究

- 關稅引下를 中心으로 -



2009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國際通商物流學科

蔡 爽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WTO體制下的
中國 關稅制度에 관한 研究

- 關稅引下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尹光云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國際通商物流學科

蔡 爽

蔡爽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2月



主 審 經營學博士 李 春 洙 (印)

委 員 經營學博士 吳 泰 炯 (印)

委 員 經營學博士 尹 光 云 (印)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II. WTO체제하의 중국 관세제도의 변화와 관세법 체계	4
1. 중국 관세제도의 개황	4
가. 중국 관세제도의 기원	4
나. WTO 가입 전에 중국 관세제도의 발전과정	7
2. 중국의 WTO가입 경과와 관세제도의 변화	12
가. 중국 WTO 가입과정 및 협의내용	12
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각종 관세제도의 변화	16
3. WTO체제하의 중국관세법 체계	19
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의 개정	19
나. 중화인민공화국관세조례(中華人民共和國關稅條例)의 개정	21
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의 개정 ..	21
라. 기타 관세 법규 및 규정	22
III. WTO체제 이후 중국 관세인하의 현황과 영향	23
1. 관세인하의 전 세계 추세	23
가. 다자간 무역협상 및 성과	23
나. 관세인하의 추세	26
2. 중국의 경제 및 관세인하의 현황	27

가. 중국경제의 현황	27
나. 중국 관세인하의 현황	31
3. 관세인하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가. 관세인하에 따른 산업별 영향	33
나. 관세인하가 수출입무역에 미친 영향	42
IV. WTO체제하의 관세인하추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47
1. 중국 관세인하제도의 문제점	47
가. 관세율구조 측면의 문제점	48
나. 세칙분류 측면의 문제점	52
다. 관세징수 측면의 문제점	53
라. 관세법 체계의 문제점	53
2. WTO체제하의 관세인하추세에 따른 중국의 대책	54
가. 관세율구조의 최적화	54
나. 합리적인 세목분류제도	57
다. 다양한 관세징수표준의 실시	58
라. 관세법 체계의 확립과 보완	59
V. 결 론	60
<참고문헌>	65

< 표 차 례 >

<표 2-1> 중국의 관세율 인하 조치 추이	12
<표 2-2> 중국의 가입 양허 조건	14
<표 2-3>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연도별 관세율 인하계획	15
<표 3-1> GATT 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25
<표 3-2> UR협정 타결 이후 관세인하의 추이(%)	26
<표 3-3> 세계 GDP 변화추이	30
<표 3-4> 2007년도 세계 GDP 순위(PPP기준)	30
<표 3-5> 산업별 관세율 변화추이	33
<표 3-6> 중국 국내총생산 및 구조의 변화 추이	34
<표 3-7> 중국 철강 산업 주요품목의 생산량 및 증가율	38
<표 3-8> 중국 IT산업 주요품목의 생산량 및 증가율	40
<표 3-9> 세계 수출입총액 순위 변화 추이	44
<표 4-1> 중국 및 일부 국가 농산품의 관세율(%)	48

< 그림차례 >

<그림 3-1> 중국 GDP 및 성장률(1996~2007)	29
<그림 3-2> 중국 평균관세율 인하추이(%)	32
<그림 3-3> 중국주요 농산품 생산량(만톤)	35
<그림 3-4> 중국 자동차산업 생산량 및 증가율	36
<그림 3-5>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및 증가율	44
<그림 3-6> 중국 수출무역구조의 변화추이(%)	46
<그림 3-7> 중국 수입무역구조의 변화추이(%)	46
<그림 4-1> 중국 관세법 체계의 예상구조도	60

A Study on China's Tariff System under WTO

- Focused on Tariffs Concession -

Shuang Ca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ariffs have a larger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conomies, especially for structure, flow, and quantity of commodity. As a result, government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tariff policy mak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ariffs i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nd market competition to make their economies not suffer from importing foreign goods. However, this protection must be limited to a certain scope and extent. Otherwise it would become over-protection and inhibit economic development.

Having 47 years' history and presiding over eight rounds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ATT was replaced by WTO on January 1, 1995. Hereafter, WTO continued to call for the members to reduce and restrict the level of tariffs to promote trade liberalization.

After China's accession to WTO, China had reduced the tariff from 15.3% to 9.8% in 2008. Under WTO system, China effectively protected domestic industries and expanded the volume of foreign imports and exports through adopting free trade policies such as reducing tariffs and

duty-free on some commodities. The value of foreign trade increased from U.S. Dollars Five Hundred and Nine Billion Seven Hundred Million only in 2001 to U.S. Dollars Two Thousand One Hundred and Seventy-Three Billion Eight Hundred Million only in 2007.

Now, tariff level in the world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Tariff concessions become an inevitable choice. Accession to WTO brough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an in-depth study on tariff concessions has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is study, information from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orea's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ese customs statistics" and academic papers, dissertations home and abroad were used as basis of literature investigation to complete the study on effect of China's fast-tariff concessions on domestic industry and foreign trade under WTO system.

This paper is divided into 5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the necessity, purpose and research methodology of this study were described. The origin, history of China's tariff system, tariff policies in different periods and changes of system and legal system after accession to WTO were introduced in Chapter 2.

Based on the above literature review, the changes of gross national income (GDP), import and export trade and industry structural after tariff concessions were discussed in Chapter 3. In Chapter 4,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tariff concessions were presented. A general summary was made in chapter 5.

Key Words :

WTO, Tariff, Tariff System, Tariffs Concession, China's Customs Law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관세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의 부과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고, 산업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으며, 정부의 관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는 해당 재화의 국내 소비자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가 내국세와 다른 점은 일국의 임의적 세율 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GATT의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쳐 개최된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 UR협정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1995년 1월 1일 출범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렇게 UR협정을 끝으로 GATT 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세계 각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축소하고,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 이후 관세제도측면에서 관세양허안(關稅讓許案)에 따라 수입관세율을 대폭적이고 점진적으로 인하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에는 평균관세율이 9.8%로 인하되었다.

중국은 WTO 체제하에서 관세율의 인하와 무관세화 등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역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규모는 2001년 WTO 가입 시 5,097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21,738억 달러

를 초과하였고 6년 만에 4배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세인하의 정도가 수출입, GDP 등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WTO 협상에 의한 관세인하가 미치는 산업별 영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이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질 관세인하 협상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 관세제도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관세제도와 산업보호 및 실효보호율 이론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있었다. 세부 산업별 분석이나 대외수출입교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WTO 체제하에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인하가 산업보호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세인하의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가 주목적이다. 그러나 산업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및 철강산업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관세부분이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초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변화되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세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대외경제연구원,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통계, 국제은행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국내외 석·박사 학위 논문, 학술지, 정기간행물의 연구 논문, 세미나 자료 등 기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 중국의 관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통해 자국의 국내경제 및 대외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분석한 후 자국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II 장은 중국 관세제도의 기원 및 개혁·개방을 배경으로 관세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WTO 가입을 위한 협상내용 및 가입 이후에 각종 관세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본 후, WTO 가입 이후 각종 관련 법규의 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장은 2001년 이후 경제가 연평균 10%로 성장한 중국은 2007년에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관세율부분은 협의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08년에 9.8%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자동차, 철강, IT 등 중요한 산업의 생산력과 증가율에 대해 살펴 본 후, 대외수출입현황분석, 대외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IV 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 및 대외 수출입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 보며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다.

WTO 체제하 관세인하추세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V 장은 결론으로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향후 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I. WTO체제하의 중국 관세제도의 변화와 관세법 체계

1. 중국 관세제도의 개황

가. 중국 관세제도의 기원

중국에 있어서 관세제도가 문헌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주왕조(周王朝)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기(史記)에 의하면 西周(기원전 770년까지)때부터 각 제후들은 변경(邊境)에 변관(邊關)을 설치하고 물물교환과 소량의 무역을 행하였다. 변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였는데, “關市之賦”¹⁾에서 기록한 타국의 상인에게는 국가 공증(公證)의 통관카드가 발행되었고 화물에 대해서는 “關賦百取一”(1/100)의 관세를 부

1) 關市之賦는 관세와 조세의 양자를 총괄하여 부르는 것으로 關市의 稅라는 단일의 稅가 존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과하였다.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진왕조(秦王朝)에 의해 통일되면서 이 시기에 외국과의 변경무역이 활발해지고 관세수입은 국가의 귀중한 재원이 되었다.

한왕조(漢王朝)에 이르러 대외 교역화물에 대해서 엄격한 법률로 관리하여 관세를 면세하였지만 한무제(漢武帝)의 통치시기에 이르러서는 遠征에 따른 많은 전쟁비용지출로 재정압박에 처하자 다시 관세를 부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중대에 들어가면서 당나라(唐朝)시대부터 산업, 교통 및 대외적 발전에 따라 무역이 발달하였는데 관세제도로서 광주(廣州)에 처음으로 현재의 해관에 해당되는 시박사(市舶司)²⁾를 설치하였다. 당시의 수입화물에 대해 시박사가 대략 30%정도의 관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宋朝)의 기본적인 관세제도는 당나라의 시박제도를 승계한 것이며, 법률제도로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박규범(市舶規法)을 제정하였다. 이는 고대의 관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입무역관리의 전문법이라 할 수 있다. 송나라의 시박규범(市舶規法)은 화물이나 선박관리, 특정품목에 대한 매매의 금지범위, 누세방지, 밀수관리 등 총22조로 구성되었다. 송나라의 관세는 재정 증대의 목적으로 화물에 종가(從價)로 대비하여 20%의 관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元朝)시대에는 중국통일 이후 대내적으로 육상 교통로가 활발하게 개척되었고 대외적으로 해상 교통로는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서쪽으로는 유럽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외무역도 비교적 큰 규모로 발전하였다. 관세제도로서 1293년에 市舶抽分規例³⁾를 공포하였고 단가가 높은 것

2) 시박사(市舶司)라는 명칭은 육상의 교역장소를 지칭하는 互市와 구별하여 해상을 교역장소로 사용하였다는데서 유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市舶抽分規例는 中國最告의 관세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는 선박의 등기·검사 및 밀수·탈세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은 총량의 10%, 단가가 낮은 것은 3.5%~6.5%정도 관세를 부과하였다.⁴⁾

명나라(明朝)시대의 시박사는 전에 존재하던 시대에 비해 해관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였다. 명나라초기의 종가(從價) 세율은 3.5%로 낮았지만 점차 인상되어 명나라말기에는 10%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 근대에 들어서면서 청나라(清朝)시대의 해관은 명나라시대의 시박사를 계승하여 운영하였다.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는 수입세가 16%, 수출세가 4%이고, 이 관세들은 외국상인을 대신하여 行商이 해관에 납입하였다.⁵⁾ 청나라말기(1839년)에는 서구유럽과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남경조약 등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후에 중국은 자주적인 세관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외국인 관리에 의해 관세사물의 감독을 받아야하였고 수출입세율은 남경조약에서 종가기준 5%로 정해졌다.

중국에 있어서 관세제도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고대에는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과세를 징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중대에 이르러서는 교통 및 무역이 발달하였으며 전문적인 관세 징수기관으로서 시박사를 설치하고 공식적으로 관세를 징수하였다. 그 운영에 따른 법률제도로써 시박규법(市舶規法)이 제정되었고 세관의 직제와 관리의 임면, 탈세 및 밀무역에 대한 처벌, 관세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⁶⁾

4) Qing Ye(1996), "Single and Double-pumping System in the Yuan Dynasty: the Origin of China's tariff protection policy".

5) 行商은 청나라 정부로부터 무역에 대한 특권을 부여받은 상인으로 외국상인의 대리인이 되어 수입품이나 수출품을 도매하는 소위 독점적 무역상사 그룹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官商性格을 지닌 무역상이라 할 수 있다.

6) 이원근(2002), "중국에 있어서 중·근대 관세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8권 1호, pp.223.

나. WTO 가입 전에 중국 관세제도의 발전과정

(1) 제1단계의 관세제도(1951년~1984년)

1950년 1월 정무원 제17차 정무회의에서 “정무원 관세정책과 세관업무의 결정”을 통과시켜, “해관세칙은 국가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상품과의 경쟁에서 국내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천명하였다.

1951년 5월 16일, 중앙인민정부는 중국 제1부《해관수출입세칙》(이하 “세칙”이라 약칭함)을 공포하고 실시하였다. 세칙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입 상품구조에 따른 당시 국제동맹에서 편성한 해관상품을 분류한 목록을 바탕으로 전 소련의 해관세칙을 참조하여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크게 17개 종류, 89조 939종의 세목(稅目)으로 나뉜다. 세칙은 세율의 사용원칙, 세칙 분류규칙, 납세가격과 세수징수관리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대량생산 혹은 일시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가산업을 보호하여 공업품 및 반제품의 발전을 위해 동일한 종류의 상품 수입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사치품과 비필수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율을 책정한다.

셋째, 중국 자국에서의 소비가 많고 생산이 불가능한 생산설비자재, 공업원재료, 농업기계, 곡물종자 및 비료 등은 저율관세 또는 면세를 적용한다.

넷째, 필수적인 과학도서나 병충해 방지를 위한 물품의 경우 및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면세 또는 감세조치를 실시한다.

다섯째,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해관세칙에서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즉 중국과 무역관련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맺지 않은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섯째, 중국의 수출물품 생산을 확대하고, 반제품과 가공원자재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율 혹은 수출세 감면을 적용한다.⁷⁾

세칙은 모든 수입품이 필수품(천문학, 항해 및 기타 과학기계 등), 수요품(컴퓨터 등), 비필수품(모피, 도자기 등), 사치품등 크게 4가지로 나눈다. 필수품은 최저율의 과세를 부과한다. 수요품일 경우에는 비필수품에 비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며 사치품의 경우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때 시행된 세칙은 평균관세율이 52.9%이다. 그중에는 농산품의 관세율이 92.3%이며 공산품의 관세율이 47.7%이었다.

제1부 세칙을 실시한 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따른 세율은 지속적으로 조정되었으며 1985년까지 23번이나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자주적인 보호관세정책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관세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이때 실시된 보호관세제도가 중국 대외무역의 보호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며, 이것은 중국의 유치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차별적인 무역대우에 대응하여 대외경쟁무역에서의 평등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국가 독점무역을 반영하여 여전히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 건국 초기에는 외국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해 수출입 무역량이 적었으며 관세의 중요성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문화대혁명(1966~1976년)”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경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심지어는 한동안 실제적으로 관세징수를 취소하였다.

7) Zhuye Pei(2000), "A Study On the Reform of China's Tariff System", Foreign Trade and Economic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pp.7.

(2) 제2단계의 관세제도(1985년~1991년)

1978년 중국은 11차 “三中全會”에서 경제개혁, 대외개방의 정책 노선을 선언한 이후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계획적인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대외무역 영역도 넓게 조정하였다.

중국은 1985년 3월 7일까지 30여 년 동안 실행한 제1부 세칙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하여 제2부 세칙이 공포되었다. 수정의 원칙은 개방정책을 관철하여 수출 촉진과 필수품의 수입을 확대하면서도 적절한 보호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의 관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제품,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면세 또는 저율의 관세 부과.

둘째,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혹은 완제품에 비해 낮게 부과하며 특히 단기간 내에 생산이 불가능한 비료, 사료, 약제, 정밀계측기 등 원자재 일 경우에는 더욱 낮게 책정.

셋째,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설비, 계측기 및 각종 부품은 완제품보다 낮게 부과.

넷째,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거나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부과.

다섯째,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고율의 관세 부과.

여섯째,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출상품에는 원칙적으로 면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경쟁이 치열한 상품과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일부 원자재, 반제품에 대해 수출세 부과.⁸⁾

8) 손성문, 최성일(2003),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이상의 관세제도 개혁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세칙세율의 수정과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던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상품분류목록을 수용하여 개혁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국제무역활동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시기 수출입관세율의 조정을 보면 총 품목의 약 55%에 해당하는 1,151개 세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었다. 조정 후 수입평균관세는 38%이고 이중 농산품은 43.6%이며 공산품은 36.9%이다.

1985년 중국은 세칙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이후 여러 차례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은 83종의 수입상품의 세율을 낮추고 140종의 수입상품 세율을 높였다.

(3) 제3단계의 관세제도(1992년~2000년)

중국은 대외무역체계개혁의 진행과 발전에 따라 1991년 하반기 225종의 상품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1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중국은 “自主관세인하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중국 제3부 세칙을 공포하였다.

1991년 10월 중국은 GATT에 대해 1992년 이후 3-5년 사이에 평균관세율을 1992년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약속하였다.⁹⁾ 이에 따라 1992년 중국은 세계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상품분류목록(HS 코드)을 사용하여 대폭적으로 관세를 조정하였는데 1992년 초의 평균관세율은 42.5%이었지만 1992년 12월 31일까지 총 3,371개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을 39.3%로 낮추었다. 동시에 1992년 4월에는 “수입조절세”가 취소되었다. 또한 1993년 12월 31일 총 2,944개 세목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응”, 「한국국제상학회」 제18권 제2호, pp.3.

9) 김중수(2003),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체계 -정책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pp.16.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6.4%로 인하하였다. 1994년에 또 다시 평균관세율을 35.9%로 인하하였다. 1995년에는 담배, 술, 중형차 및 비디오테이프 등을 포함한 23개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여 35.6%로 낮추었다. 이때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일부 중점제품,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공업원자재, 금속원자재, 화공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상품(가전, 자동차 등)을 포함하였다.

1995년 1월 1일 WTO설립 이후 중국의 “GATT복귀협상”은 “WTO가입협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은 대폭적인 관세 조정을 통하여 WTO의 발족과 더불어 WTO회원국이 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장쩌민(江澤民)주석은 1995년 APEC 오사카회의에서 1996년까지 4,000개 이상의 세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며 인하 폭을 30%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1996년 4월 1일 총380개 세목 중 농업상품이 포함된 총 4,996개 세목의 관세를 조정하여 평균 23%로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1997년 10월 1일 또 다시 총 4,874개 세목의 관세를 평균 17.1%로 인하하였다. 1999년 1월에 총 1,014개 세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이 16.8%로, 2000년에는 15.3%까지 관세율을 낮추었다.¹⁰⁾

이처럼 중국은 대규모적이고 대폭적인 관세율을 인하하여 중국 명목관세율이 높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시키면서 국외자원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었다.(<표 2-1>참조)

10) Zhuye Pei(2000), Ibid, pp.7.

<표 2-1>중국의 관세율 인하 조치 추이

(단위: %, 개)

년 도	인하 전의 평균관세율	인하 후의 평균관세율	인하율	대상세목
1992. 04	47.2	42.5	4.7	225
1992. 12	42.5	39.3	3.2	3,371
1993. 12	39.3	36.4	2.9	2,944
1995. 01	36.4	35.6	0.8	23
1996. 04	35.6	23.0	12.6	4,994
1997. 10	23.0	17.1	5.9	4,874
1999. 01	17.1	16.8	0.3	1,014

자료: "中國統計年鑒", 「國家統計局」, 2000

Zhuye Pei(2000), "A Study On the Reform of China's Tariff System", Foreign Trade and Economic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pp.11.

2. 중국의 WTO 가입 경과와 관세제도의 변화

가. 중국 WTO 가입과정 및 협의내용

(1) 중국의 WTO 가입 연혁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무역협정인 GATT에 "복귀"를 신청하였고, 1982년 11월에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었다. 중국은 1986년 3월 GATT에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간 WTO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¹¹⁾

중국의 WTO 가입 논의의 진전은 주로 미국의 중국 대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정치적 현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및 경제적 현안들의 대립 등 미·중 관계에 따라 좌우되었다. 1989년 천안문사태로 중단되었던 협상은 1992년 이후 중국이 관세율을 개도국 수준으로 근접시키기 위해 매년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급진전되었고, GATT 가입의 지위와 조건, 의정서 초안 등의 내용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4년 말까지 GATT로의 복귀를 통해 WTO의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무산되었다.¹²⁾

1998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미·중간 동반자관계 설립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1999년 4월 중국 주용기(朱熔基)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에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시장개방, 지적재산권보호, 농산물 교역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협상제안서를 제시하였고 중국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동년 11월 15일 미·중 양국 간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1년 9월 멕시코와의 협상타결을 끝으로 중국은 37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완료하고 WTO 가입의 정식 작업을 완결하였고 2001년 11월 11일 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승인되었다. 중국은 11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가입비준서(加入批准書)를 WTO사무국에서 기탁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비준서(批准書) 기탁(寄託) 30일 만인 2001년 12월 11일로 WTO에 제143번째 정식회원국이 되었다.¹³⁾

11) 유진석(1999),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2) 전무춘(2003),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선대대학원」 석사논문, pp.3.

13) Ping Sheng(2001), "Memorabilia of China's accession to WTO ", People's Daily,

(2)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의 협의 내용

WTO는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평한 여건 하에서의 자유무역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평한 경제 환경의 조성 과 각종 보호 및 제한의 적극적인 억제 등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중국의 가입 양허 조건

NO	주요 내용	
1	정책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서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하며 가입협상에서 합의한 조건과 일정에 따라 양허를 이행하여야 함.
2	주요 양허 내용	관세인하 ① 공산품 현행 평균관세율 17%→2005년까지 9.4%로 인하 ② 농산품 현행 평균관세율 19%→2004년까지 17%로 인하
		무역제한 및 수량제한 폐지 ① 수입허가증 관리(현행 35종 373개 품목)→가입 후 5년 내 수입허가증 폐지 ② 수입쿼터관리(현행 28종 245개 품목)→가입 후 5년 내 쿼터제 점진적 폐지 ③ WTO 가입 3년 내에 모든 기업에 대외무역권 부여
		투자 무역관련 투자규제조치 폐지, WTO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적용
		서비스 서비스 각 분야별로 양허,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적용
		지적재산권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적용
3	주요 예외	① 곡물, 담배, 연료, 광물 등에 대해서는 국유무역 유지 가능 ② 국내에서 물품의 분배와 운송에 대하여 규제조치 가능

자료: 최의현(2005),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4권 제1호, pp.5.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보장과 내국민대우 등을 들 수 있고, 정부 간여(干與) 축소를 위해서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각 상대국간의 협상내용 중 합의사항은 <표 2-2>과 같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고 이는 중국에 중요한 수입규제수단이 되었다. 가입당시 가입의정서에는 광범위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양허안(讓許案)이 포함되었다.(<표 2-3>참조)

<표 2-3>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연도별 관세율 인하계획

(단위: %)

연 도	총 평균관세율	농산물 평균관세율	공산물 평균관세율
2001	14.77	19.9	13
2002	12.72	18.5	11.7
2003	11.10	17.4	10.6
2004	10.33	15.8	9.8
2005	10.20	15.5	9.3
2006	10.19	15.5	9.3
2007	10.18	15.5	9.3
2008	10.17	15.1	9.2

자료: "Protocol of People's Republic of China's accession to WTO ", 2001.

Hanjun Hu(2004), "WTO and China's Foreign Trade", pp.156.

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각종 관세제도의 변화

(1) 관세율제도

WTO 가입이전에 중국 수출입세칙은 우대세율과 보통세율 두 가지뿐이었다. WTO 가입 이후에 최혜국 대우 실시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이 수입세칙세율의 항목에 대해 상응되는 조정을 하였으며 우대세율을 세분화하여 모두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 잠정세율, 할당관세세율과 보복관세세율 등 일곱 가지로 설정하였다.

최혜국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이하 “세칙”이라 약칭함) 제10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중국이 공동 실시한 최혜국대우조항의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새 세칙은 폴리에틸렌 등 44개 항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하였다.

협정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중국과 특정국가, 국제기구와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을 맺은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까지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맹국가의 일부상품에 대해 협정한 <중국-동맹자유무역협정세율>; 원산지가 칠레의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한 <중국-칠레자유무역협정>; 원산지가 파키스탄의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한 <중국-파키스탄자유무역구역> 등의 협정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특혜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중국과 특혜관세를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가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의 일부 상품; 원산지가 앙골라 등 28개 아프리카지역 후진국의 일부 상품; 원산지가 예멘, 몰디브, 사모아, 와누아투,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후진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보통세율은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상기 우대세율과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에 적용하고 상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4)

잠정세율은 세칙 제11조에서 규정한 최혜국세율과 잠정세율이 겹칠 경우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협정세율 및 특혜세율이 잠정세율과 겹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 보통세율을 포함한 수입물품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할당관세세율은 세칙 제12조에서 정부가 규정한 수입물품만 할당관세세율을 적용한다.

보복관세세율은 세칙 제14조에서 타국 및 지역이 중국과의 협정 또는 조약을 위반할 경우나 중국의 수출품에 금지, 제한, 할증관세 및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관세를 할증 부과한다. 15)

(2) 감면관세제도

중국해관에서 집행하는 주요 관세수입 우대정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규칙에 부합되는 관세감면정책이다. 외자를 유치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감면관세정책 《수입설비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외상(外商)투자기업 수입설비 및 부품의 면세정책》이 해당된다. 현재 중국은 법정관세감면, 특정관세감면, 임시관세감면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관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법정관세감면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관세조례》

14) Mengzhou Xu(2005), "Tax Law", Renmin University Press, pp.182.

15) <http://www.customslawyer.cn> (중국해관변호사 웹 사이트)

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등 법령에서 규정한 관세감면을 의미하며, 해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실시하여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인민폐 10원(元) 미만의 소세액 물품의 관세감면, 상품가치가 없는 광고용품과 샘플의 관세감면, 무상으로 보상하는 수출입 물품의 관세감면 등이 포함된다.

특정관세감면은 법정관세감면 외에 국무원에서 정한 감면방법에 의해 특정지구, 특정기업 및 특정용도의 수출입에 대해 실시하는 감면제도이다. 특정관세감면 대상물품은 화물의 수출입 전에 세관에 관련 허가서류나 증명 및 증표를 소재지세관에 제출하여 면세수속을 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세관감면증명서를 발급한다. 여기서는 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수입설비, 외상(外商)투자기업 수입설비기자재, 과학연구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학교육용품, 중국장애인복지기금회(中國障礙人福祉基金會) 또는 지방민정청(구)(地方民政廳)의 증명서류를 소재지세관에 제출하여 면세신청을 한 후에 장애인에 대해 건강증진(健康增進) 등을 위한 수입물품 등의 경우에 특정관세감면을 채택한다.

임시관세감면은 법정관세감면 및 특정관세감면대상 물품 이외의 특별히 필요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면관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반드시 재난구호용(災難救護用)이나 특수상황으로 국가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상황에서만 허용하며 수출입 이전에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 및 증명을 첨부하여 소재지세관에 신청한 후에 발급한다. 16)

(3) 관세환급제도

중국은 1985년 3월에 국무원이 《비전재정부가 “수출입화물이 징수, 환급 및 증치세(부가가치세)에 관한 규정“에 관한 통지》를 정식으로 공포하

16) <http://www.customs.gov.cn> (중국해관 웹 사이트)

였다. 그리고 동년 4월 1일부터 수출입물품의 환급 제도를 실시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정부는 생산형 수출기업이 스스로 수출하거나 위탁(委託) 수출한 화물에 대해 면세, 상계, 환급 등의 방식을 취한다.

2004년부터 증치세의 환급율이 17%, 13%, 11%, 8%, 5% 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평균 12%로 채택하였다(중국의 증치세가 17%이다).

2006년 9월 14일 중국정부(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는 다시 한 번 수출 환급율에 대한 조정발표를 하였다.

환급율이 증대한 기술 장비, 일부 IT제품 및 생물의약품 등 국가산업정책상 수출을 장려하는 하이테크제품에 대한 환급율은 13%에서 17%로, 일부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한 환급율은 5% 또는 11%에서 13%로 상향조정하였다.

철강재 11%에서 8%로, 일부목재제품 13%에서 11%로, 도자기 부분완제품과 시멘트 유리 등은 13%에서 8%로, 일부 유색금속재료는 13%에서 5%로 각각 하향조정하였다.¹⁷⁾

3. WTO체제하의 중국관세법 체계

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의 개정

중국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이하“해관법”이라 약칭함)은 1987년 1월 22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7) <http://www.kandc.biz> , 매일 엽텃 중국뉴스, 2006. 09. 26.

제9차 회의(第6次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9次會議)에서 통과되었으며 1987년 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1호(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51號)로 공포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선진 해관법 체계 확립 및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第9次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16次會議)에서 “해관법”을 개정 공포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법은 총 61개 조문에서 102개 조문으로 확대 개정이 되었다. 특히 밀수, 부정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법 사전 예방; 수출입 물류화물에 대한 세관 차원의 지원 행정과 EDI체제하의 세관수출입 신고의 법적인 장치 확보; 지적재산권, 상품분류, 수출입 화물의 사후심사제도에 대한 법조문의 신규 제정; 세관직원과 세관 관련 업무 종사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 개정되었다. “해관법”은 중국 해관법규 체계 중에서 핵심으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해관법”중 제5장 “관세” 편에서는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이나 반출입을 허가한 물품은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징수하며(제53조), 수출입화물의 화주 및 국경출입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제54조)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해관법”은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제55조), 감면세관리(제56조), 특정물품 감면세관리(제57조), 임시감면세 결정(제58조), 과세납부 일시유예(제59조), 납세기일(제60조), 세수보전(제61조), 관세의 추징(제62조), 관세의 환급제도(제63조), 납세 쟁의(제64조), 관세의 징수관리(제65조)등 관세제도의 주요구성 요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관세제도의 기본구성을 확립하며 최고의 법적인 효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조례(中華人民共和國關稅條例)의 개정

중국은 현행의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조례(中華人民共和國關稅條例)》(이하“관세조례”라 약칭함)가 1985년 3월 7일 중국 국무원이 첫 공포하였고 1987년 9월 12일, 1992년 3월 18일 두 번 개정되었다.

2003년 10월 29일 국무원 제26차 상무회의(國務院第26次常務會議)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 조례”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1992년 03월 18일 국무원 수정 공포된 “관세 조례”가 폐지되었다.

“관세 조례”는 전반적으로 중국 수출입관세징수관리의 지도사상(指導思想) 및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조건에 따른 수출입화물이 관세율의 설립, 수출입화물 관세가격의 결정, 관세의 징수, 환급제도, 감면세제도, 납세 정의할 때의 상고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의 개정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이하“세칙”이라 약칭함)을 제정하고 관세의 세목과 세칙 그리고 각 호 조항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조례(中華人民共和國關稅條例)》의 한 부분으로 국제 관세조직의 통일된 상품목록을 근거하여 상품의 각 지정번호에 따른 수출입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세칙”의 목록 및 관련 규정 등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조례(中華人民共和國關稅條例)》중에서 제4조에서는 국무원은 관세세칙위원

회(關稅稅則委員會)를 만들어 “세칙”의 세목, 세칙 각 조항, 세율의 조정과 해석을 책임지게 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활동으로는 임시세율 적용,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며 쿼터관세 세율을 결정하고, 반덤핑관세, 반보조세, 보장조치관세, 보복성관세 및 기타 관세조치를 결정하며 특수 상황하의 세율 적용을 결정하며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라. 기타 관세 법규 및 규정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세율의 적용을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條例)》,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條例)》,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補助條例)》,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中華人民共和國保障措置條例)》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중국해관총서(中國海關總署)(한국의 관세청)의 명령에 따른 해관 관세징수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관세 징수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稅徵收管理方法)》; 관세평가제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심정 수출입화물 납세가격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審定進出口貨物完稅價格方法)》;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가의 특혜수입화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특별혜택관세 대우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特別優惠關稅待遇進出口貨物原產地管理方法)》등 법규 및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III. WTO체제 이후 중국 관세인하의 현황과 영향

1. 관세인하의 전 세계 추세

가. 다자간 무역협상 및 성과

“무차별 대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 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GATT는 총 8차례의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다. 8차례 다자간협상에서의 주요 관심분야는 주로 관세인하에 있었다.

특히 약 3년간에 걸쳐 개최된 6차 라운드는 총 54개 국가 참여하여 과거 5차례의 일반교섭과는 다르게 교섭방식이 품목교섭에서 일괄교섭으로 바뀌었으며 관세인하방식도 일괄인하방식이 채택되는 등 GATT사에 획기적 실적을 이룬 교섭이었다.¹⁸⁾

1973년 도쿄에서 열린 7차 도쿄 라운드는 여러 나라 사이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이른바 조화(Harmonization)방식과 비관세장벽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져 1979년 1월 가조인식을 거쳐 그 결과를 보게 되었다. 협상된 내용은 관세인하에 관한 각서교환,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위한 수입허가 수속의 간소화, 제품규격의 국제적 통일규정의 설정, 상쇄관세의 적용금지 및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1986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8차 UR협정(우루과이 라운드)의 특징은 중

18) 박대위(2007), 「무역개론」, 박영사,

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정보·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1993년 말에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타결하였다.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 UR협정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1995년 1월 1일 출범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1996년 초 WTO는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 200여개 품목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2000년까지 완전한 무관세화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말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EU 등 29개국의 각료 명의로 ITA 각료선언을 채택하였고, 1997년 3월 26일 총 43개국의 ITA 양허표가 검토·승인되었다.



<표 3-1> GATT 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NO	협상의제	협상장소	시 기	참가국 (개)	주 요 성 과
제1차	관세협상	Geneva	1947. 4~10	23	-45,000개 품목 관세인하
제2차	관세협상	Annecy	1949. 4~10	33	-5,000개 품목 관세인하 -1948년 대비 관세인하율 25%
제3차	관세협상	Torquay	1950. 9~ 1951. 4	39	-8,700개 품목 관세인하
제4차	관세협상	Geneva	1956. 1~5	26	-3,000개 품목 관세인하
제5차	관세협상	Dillon Round	1960. 9~ 1962. 7	45	-4,400개 품목 관세인하 -평균관세인하율 7%
제6차	관세협상	Kennedy Round	1964. 5~ 1967. 6	54	-30,300개 품목 관세인하 -평균 관세인하율 35% -덤핑방지관세협정 탄생
제7차	관세협상	Tokyo Round	1973. 9~ 1979. 4	99	-관세인하, 평균관세인하 34% -개도국 우대협정 체결 -비관세장벽 관련 협정 합의
제8차	관세협상	Uruguay Round	1986. 9~ 1993. 12	123	-WTO 창설 -공산품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농업, 섬유, 서비스 무역자유화확대 -지적소유권 보호

자료: 정재호(2003), "WTO/DDA 협상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제82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을 예외로 하고 2005년부터 이들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나. 관세인하의 추세

UR협정 타결 이후 관세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은 평균관세율을 3.8%까지 인하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평균관세율을 3%까지 인하하였고 유럽의 경우는 평균관세율을 3.6%까지 인하하였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는 관세율 인하 폭이 각각 1.7% 및 4.8%까지 된다. 주요 공업화국가는 약제, 건설설비, 철강, 의용설비, 농업기계, 맥주, 완구 및 종이 등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공산품 측면에서 선진국은 6.3%에서 3.8%로 인하하였고 개도국은 평균관세율을 20.5%에서 14.4%로 인하하였다. 농산품 측면에서 선진국은 평균관세율을 2001년까지 36%로 인하하였고 개도국은 2005년까지 24%로 인하하였다. 섬유산업은 1995년~2005년까지 점차적인 무역자유화에 달성하고 있다.(<표 4-2>참고)

<표 3-2> UR협정 타결 이후 관세인하의 추이(%)

	선진국	개발도상국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	WTO 모든 회원국
UR협정 타결 이전	6.3	20.5	8.6	9.9
UR협정 타결 이후	3.8	14.4	6.0	6.5
관세인하 폭	40.3	29.7	30.2	34.3

자료: Fu Xu(2005), "WTO Rules and China's Trade Policies", Tianjin Nankai University Press, pp.282.

2. 중국의 경제 및 관세인하의 현황

가. 중국경제의 현황

(1) 중국 경제체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계획적인 대규모 건설을 실시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1953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은 10차례의 “5개년 계획”을 달성하였다. 현재는 11.5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의 제3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실용주의 정책은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등 4개 부분의 현대화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경제체제개혁 및 경제기구개편을 단행해왔다.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 있어 경제체제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중의 하나였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1992년부터 더욱 본질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의미한다. 1992년 10월 제14차 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발걸음을 가속화 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업의 더 큰 승리를 쟁취하다»라는 제목의 보고를 행하였다.

공유제경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경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국유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환해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근대적 기업제도를 확립한다. 또 전국에 통일적으로 개방하는 시장시스템을 확립해 도시와 농촌의 시장을 연결하고 국내시장을 국제시장과 연결해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시켰다. 정부의 경제관리 기능을 전환해 매크로

규제시스템을 확립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되 효율을 우선시하고, 아울러 공평한 분배제도 확립하였다.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가입을 승인 받으면서 경제성장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와 같은 산업전반의 구조변화를 맞이하였고, 이로 인해 교역환경의 개선, 외자유치의 증대, 국내개혁의 가속화, 노선투쟁의 종결로 인한 정치적 안정, 서비스업의 재편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2010년까지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2020년에는 성숙단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2) 경제 성장 추이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래 1986년부터 1990년(7.5계획시기)까지 연평균 7.8% 증가하였으며, 공업·농산업을 11%로 증가하여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은 GATT "복귀"를 협상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점차 낮게 조정하면서 연평균 11.4% 성장률, 이 중에서 제3차 산업이 8.1%로 성장률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1995년 1월 1일 WTO 설립 이후, 중국의 GATT "복귀" 협상은 "WTO 가입협상"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한 번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시작하였다. 1996 ~2000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에도(1997. 06~1998. 07)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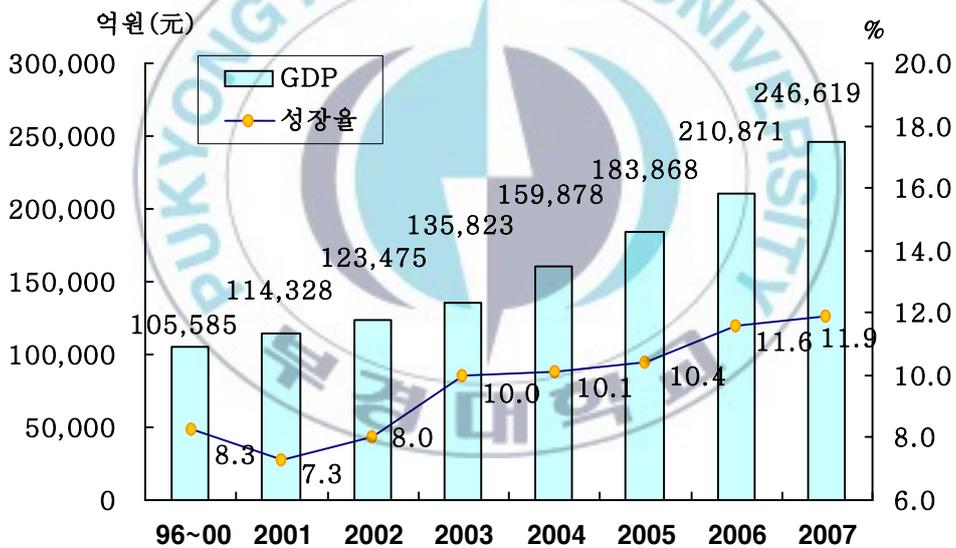
특히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선진국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2001년에 7.3%대의 고도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중국 WTO 가입은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무역의 증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관세측면에서 관세율의 대폭적이고 점진적인 인하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관세

율이 15.3%에서 9.8%로 인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GDP는 11.4%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2월 29일 제10기 중국 인민대표 대회 상위회 제19차 회의를 달성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농업조세조례”를 폐지하였고 농산품에 대해 조세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다. 2006년에 제1산업은 24,700억 원(元)으로 5%이며, 2006년에는 전체 GDP의 1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참고)

<그림 3-1> 중국 GDP 및 성장률(1996~2007)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중국의 국민경제 규모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표 3-3> 세계 GDP 변화추이

(단위: 10억 달러)

년 도	미 국	일 본	중 국	독 일	영 국	프 랑 스	이탈리아	한국 ¹⁹⁾
2001	10,652	4,141	1,159	1,846	1,424	1,309	1,088	421
2007	13,776	4,379	3,607	3,317	2,767	2,545	2,095	942

자료 : The World of Bank 통계 자료

1991년 중국의 GDP 규모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스페인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 세계 10위에 올랐다. 이후 계속되는 고성장에 힘입어 2001년 기준으로 중국 경제규모는 세계 6위권의 생산규모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2007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11.9%로 미국, 일본의 뒤를 이어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참고) 한편 2007년 IMF가 발표한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중국은 구매력지수 70,430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참고)

<표 3-4> 2007년도 세계 GDP 순위(PPP기준)

(단위: 10억 달러)

년 도	미 국	중 국	일 본	인 도	독 일	영 국	러시아	한 국 ²⁰⁾
2007	13,860	7,043	4,305	2,965	2,833	2,147	2,076	1,206

자료 : IMF 통계 자료

19) 한국이 2001과 2007년도에 세계의 13위를 차지하였다.

20) 세계 16위를 차지하였다.

나. 중국 관세인하의 현황

중국은 WTO가입 양자협상에서 관세율을 9.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1년 1월 1일부터 관세의 전체 수준을 재인하하기로 결정하였고 관세에 대한 대폭적인 인하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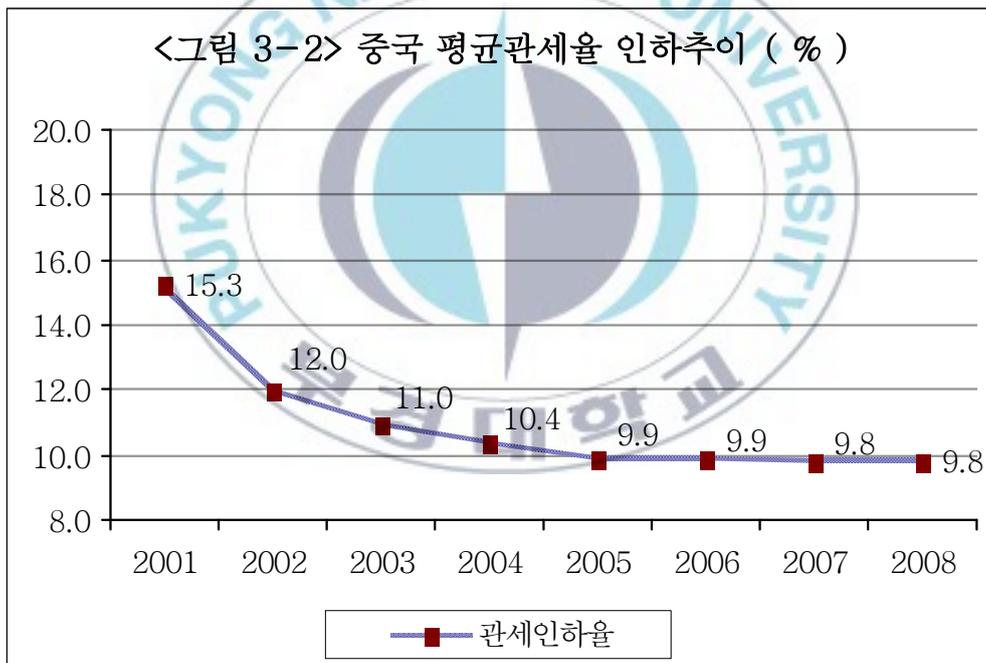
2002년 중국은 수입세칙을 조정한 총 7,316개 세목(稅目) 중에서 5,332개(총 세목의 73%) 세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평균관세율이 2001년의 15.3%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그 가운데 공산품은 평균관세율이 14.8%에서 11.3%로 인하되었고 농산품은 18.8%에서 18.1%로 인하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WTO가입 관세인하계획에 3,000여개 세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고 평균관세율이 2002년의 12%에서 11%로 인하되었다. 그 가운데 공산품의 관세율이 10.6%, 농산품은 17.4%로 인하되었다.²¹⁾ 2004년 1월 1일부터 2,414개 세목의 관세율을 인하조정하며 평균관세율이 10.4%로 인하되었다. 공산품의 관세율이 9.5%, 농산품의 관세율이 13.8%로 인하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1,000여개 세목의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9.9%로 인하되었고 공산품은 9%, 농산품은 15.3%로 각각 인하되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58개 세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조정한데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HS 코드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다시 인하하였다. 공산품과 농산품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8.95%와 15.2%에 달하고,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가입 당시 15.3%에서 2007년 9.8%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지만, 당초 중국이 WTO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

21) Chunhong Zhao(2003), "Impact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tariff reduction on imports", Xiamen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²²⁾

2007년 12월 29일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제10기 회의를 통해서《2008년 관세실시방안(2008年關稅實施方案)》을 발표하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수출입관세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²³⁾

이번 관세율이 조정된 후에 2008년의 평균관세율은 9.8%로 인하되었고 그 가운데 농산품의 평균관세율은 15.2%,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8.9%로 인하되었다. 이번에 주요 조정대상은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등이 속해있다.(〈그림 3-2〉과 〈표 3-3〉참고)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22) Li Cao(2007), "A Study On Consummation of China's Tariffs Legal System under WTO Framework",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s degree thesis, pp.13.

23) 중국해관총서공고, 제79호, 2007

<표 3-5> 산업별 관세율 변화추이

(단위: %)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산품	14.8	11.3	10.6	9.5	9.3	9.0	8.95	8.9
농산품	18.8	18.1	17.4	15.8	15.5	15.3	15.2	15.2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3. 관세인하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관세인하에 따른 산업별 영향

(1) 산업구조의 변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대폭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수량 제한제도를 취소하였으며 기타 각종 무역장벽 개선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리고 관세인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표 3-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 산업구조 중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7.1%가 증가하였으며 3대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3차 산업도 1991년부터 2006년까지 6.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6> 중국 국내총생산 및 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억원(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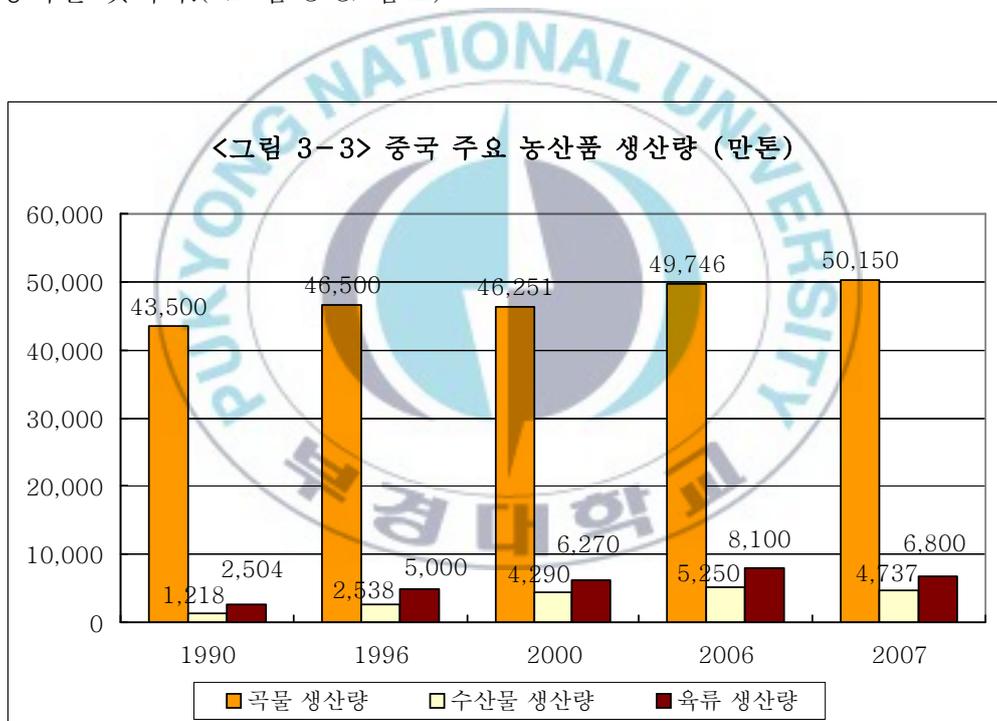
년도	국내총생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91	21,782	100.0	5,342	24.5	9,102	41.8	7,338	33.7
1992	26,924	100.0	5,867	21.8	11,700	43.4	9,357	34.8
1993	35,334	100.0	6,964	19.7	16,454	46.6	11,916	33.7
1994	48,198	100.0	9,573	19.8	22,445	46.6	16,180	33.6
1995	60,794	100.0	12,136	19.9	28,680	47.2	19,978	32.9
1996	71,177	100.0	14,015	19.7	33,835	47.5	23,327	32.8
1997	78,973	100.0	14,442	18.3	37,543	47.5	26,988	34.2
1998	84,402	100.0	14,818	17.6	39,004	46.2	30,580	36.2
1999	89,677	100.0	14,770	16.5	41,034	45.8	33,873	37.7
2000	99,215	100.0	14,945	15.1	45,556	45.9	38,714	39.0
2001	114,328	100.0	15,781	14.4	49,512	45.1	49,035	40.5
2002	123,475	100.0	16,537	13.7	53,897	44.8	53,041	41.5
2003	135,823	100.0	17,382	12.8	62,436	46.0	56,005	41.2
2004	159,878	100.0	21,413	13.4	73,904	46.2	64,561	40.4
2005	183,868	100.0	23,070	12.5	87,365	47.5	73,433	40.0
2006	210,871	100.0	24,737	11.7	103,162	48.9	82,972	39.4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2) 산업별 영향

(가) 농산품

중국의 농업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의 지원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농업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지면 농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세인하와 함께 수출보조금, 농업지원금 등이 폐지되어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곡물의외 육류와 수산물 등 국제 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낮은 노동집약형 농산물과 식료품은 오히려 생산량 증가할 것이다.(<그림 3-3>참고)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농산품 중 곡물생산을 중심으로 노동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이 가격경쟁우세를 상실하였고 농산품이 공산품보다 높은 관세를 보유하고 있고 2006년부터 국내농업조세를 폐지하는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은 기후의 영향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농업사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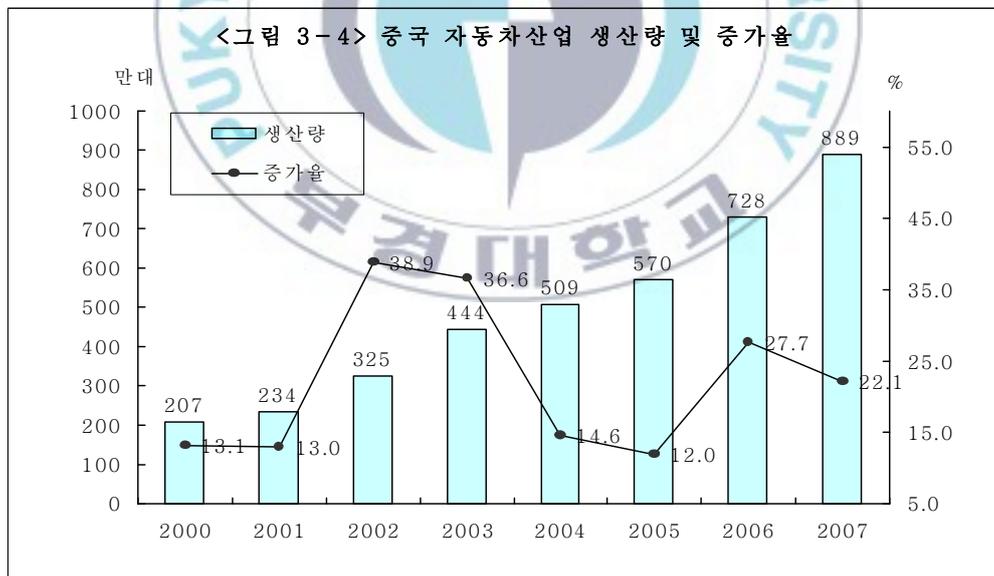
시스템”등 기관의 설립 등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²⁴⁾

(나) 제조업

WTO 가입 이후 관세인하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 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i) 자동차산업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낮추었다. 소형 승용차, SUV, 소형 승합차(HS 8703)의 수입관세율을 28%에서 25%로 낮추었고, 차체·밀판·중저 배기량 석유발동기 등 자동차 부품(HS 8716)의 수입관세율을 13.8~16.4%에서 10%로 낮추었다.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24) Yi Zhao, "A Study On China's tariff autonom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pp.47.

자동차산업은 중국의 시장 및 외국인투자 개방이 크게 확대되는 산업이다. WTO 가입과 동시에 90년대 중국의 자동차산업 정책이었던 “3大3小3微”은 사라졌다.²⁵⁾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80년 22만대에 불과하던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 200만대를 넘어섰고, 2006년 728만대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7년 생산량은 889만대에 달하였고, 2008년에는 1,0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부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중국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생산판매액도 2006년 5,397억 원(元)으로 전년대비 34.4%로 성장하였다. 2010년에는 생산판매액이 1,000억 원(元)에 달할 전망이다.²⁶⁾

(ii) 철강 산업

중국의 철강 산업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수입관세율이 2001년 11%에서 2005년 8%로 인하되었다. 현재 중국의 조강(Crude Steel)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1~2%(HS 7201, HS 7205)이고 생산량은 48,966만 톤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고 소비량은 39,021만 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강재(Steels)에 대한 관세율은 4% 내외이며 2007년 생산량은 56,894만 톤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고부가가치 제품인

25) 최의현(2005),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5권 단일호, pp.94.

26) 한국무역협회 2008년 보도 자료를 근거하여 정리함.

냉연박판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32.8% 증가한 2,455만 톤에 달하였고 아연도금판은 전년대비 51.9% 증가한 1,508만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강(Cast Steel)에 대한 관세율은 대부분 1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이 2006년보다 18.6% 증가한 48,917만 톤에 달하였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철강 생산량의 10% 정도를 적정 수출물량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철강업계는 과잉생산 구조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²⁷⁾ 향후 관세의 추가인하를 단행하여도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7> 중국 철강 산업 주요품목의 생산량 및 증가율

년도	주강(Cast Steel)		조강(Crude Steel)		강재(Steels)	
	생산량(만톤)	증가율(%)	생산량(만톤)	증가율(%)	생산량(만톤)	증가율(%)
2000	13,101	4.5	12,850	3.4	13,146	8.6
2001	15,554	18.7	15,163	18.0	16,068	22.2
2002	17,085	9.8	18,237	20.1	19,252	19.8
2003	21,367	25.1	22,234	21.9	24,108	25.2
2004	26,831	25.6	28,291	27.2	31,976	32.6
2005	34,375	28.1	35,324	24.9	37,771	18.1
2006	41,245	20.0	41,915	18.7	46,893	24.2
2007	48,917	18.6	48,966	16.8	56,894	21.3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27) 한국무역협회 2008년도 보도자료.

(iii) IT산업

관세인하 효과가 고관세율 품목인 전자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0~50%로 영향을 크게 받으며, 2005년 평균관세율은 9%에 달하였고 부품의 경우는 관세율이 8% 내외였다. 특히 집적회로(HS 8542), 이극관(HS 8541) 등의 품목은 무관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2000~2007년 IT산업제품의 생산량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이동통신 제품의 생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으며, 2007년 전년대비 14.3%로 증가한 54,857만대, 컴퓨터는 전년대비 29.3%로 증가한 12,073만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까지 중국이 2억 명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해 인터넷 보급률을 15%로 향상시켰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 정보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2%~45%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표 3-6>참고)

<표 3-8> 중국 IT산업 주요품목의 생산량 및 증가율

년도	이동통신		컴퓨터		집적회로	
	생산량(만대)	증가율(%)	생산량(만대)	증가율(%)	생산량(억개)	증가율(%)
2000	5,248	43.6	672	65.9	59	40.5
2001	8,032	53.0	877	30.5	64	8.5
2002	12,146	51.2	1,464	66.9	96	50.0
2003	18,231	50.1	3,217	119.7	148	54.2
2004	23,752	30.3	5,975	85.7	236	59.5
2005	30,354	27.8	8,085	35.3	270	14.4
2006	48,014	58.2	9,336	15.5	336	24.4
2007	54,857	14.3	12,073	29.3	412	22.6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중국의 집적회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며,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집적회로 시장의 1/3 수준이다.²⁸⁾

11.5계획(2006~2010년) 기간 중 중국 IT산업의 주요 발전 목표는 2006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을 20%대로 유지하고 2010년 IT산업의 부가가치세액을 22,600억 원(元)으로 끌어 올려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8) 중국국가통계국과 한국무역협회 보도 자료를 근거하여 정리함.

(다) 서비스업

1978년 이후 중국 서비스업의 GDP 점유율은 23%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 이르러 39.4%로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중국서비스업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현실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낙후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중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각각 GDP의 59%,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4개국 중 가장 낮다. 그 밖에 세계 각국의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이며, 중국은 중, 저소득 국가보다도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정도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외개방 정도가 큰 분야로 보는 광고, 건설, 부동산 등 서비스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는다. 2005년에는 광고 서비스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었다. 건설설계, 도시계획서비스업은 2006년까지 합자(合資)²⁹⁾가 허용되었다. 수수료 혹은 계약서를 기초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업은 합자가 허용되며, 의료서비스업은 수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대외개방 정도가 보통인 분야로 보는 판매, 교육, 운송 및 창고 등의 서비스업에 관한 시장개방정도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소매판매, 중국국내 생산 상품에 대한 A/S 서비스업무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국내 합자기업 설립, 수입 및 중국산 상품의 커미션과 도매사업 종사도 허가한다.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학교와 기타교

29) 합자회사(合資會社) :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의 성질로 중국 국내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아가 외국인투자자의 합자 형태의 학교 설립도 허가된다. 다만 군사, 경찰, 정치 등 국가 특별한 교육서비스 부분과 초, 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은 합작학교 설립 허가부분에 포함하지 않는다. 11.5계획(2006~2010년) 기간의 중국 정부의 권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운송 및 창고서비스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었다. 도로여객운송, 국경출입 자동차 운송, 수상운송, 철도화물운송, 철도여객운송 등의 분야는 외국인투자 산업도 목록(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의 규정에 따라 상당 부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로운송업은 도로여객운송, 도로화물운송,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창고 저장 및 기타 도로 운송과 관한 부가서비스, 차량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대외개방 정도가 작은 분야로 보이는 보험,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이 시장 진입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다. 금융업의 경우 그동안 철저하게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개방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2007년)으로는 외국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소매금융부문에서 외국은행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 현재까지 중국 통신시장은 소수 국유기업이 독점하는 시스템인데, 단기적으로 빨리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 관세인하가 수출입무역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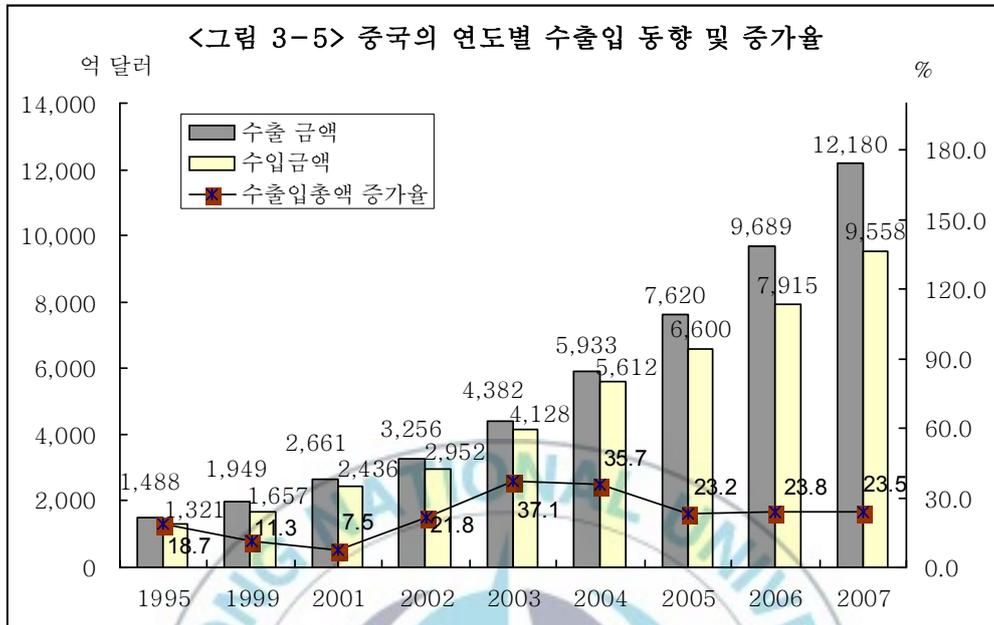
(1) 중국 대외무역의 변화 추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되고 있다. 1980년

이후 연평균 8.6%로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해왔으며 1985년 수출입 총 금액이 697억 달러(수출 274달러, 수입 423억 달러)에 달하던 무역총액은 1990년 1,155억 달러(수출 621억 달러, 수입 534억 달러)로 1984년부터 대외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변화하였다. 1995년에는 총 금액이 2,809억 달러(수출 1,488억 달러, 수입 1,32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문에 3,239억 달러(수출 1,837억 달러, 수입 1,402억 달러)로 수출은 0.5%, 수입 -0.5%로 낮은 성장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2년부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대폭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관세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 이어서 2002년에 대외무역 총액 6,208억 달러에서 2007년까지 21,738억 달러로 지속적인 높은 증가율 보이고 있다.

중국의 무역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지위도 급상승하였다.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에서 대외무역 총액 순위 16위(수출 14위, 수입 17위)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던 중국의 비중은 1995년에 세계 무역 “10대 대국”에 들어가고 2004년 중국수출입총액 순위는 2002년의 5위로부터 3위로 부상하고 그 이후 2년 동안 계속 제3위를 유지하였다.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2007년에 수출입 총액은 21,738억 달러(수출 12,180억 달러, 수입 9,558억 달러)로 중국의 무역은 전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표 3-7>참고) 중국 상무부는 11.5계획기간(2006~2010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연간 20%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3-5>참조)

<표 3-9> 세계 수출입총액 순위 변화 추이

(단위 : 억 달러)

순 위	국 가 명	1995 ³⁰⁾		2007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독 일	5,094	4,438	13,272	10,595
2	중 국	1,736	1,928	12,180	9,558
3	미 국	5,836	7,711	11,626	20,174

4	일본	4,433	3,361	7,143	6,219
5	프랑스	2,894	2,783	5,533	6,158
6	네덜란드	1,773	1,577	5,517	4,933
7	이탈리아	2,330	2,057	4,920	5,048
8	유럽	2,394	2,625	4,410	6,246
9	벨기에	1,766	1,583	4,323	4,140
10	캐나다	1,902	1,796	4,182	4,164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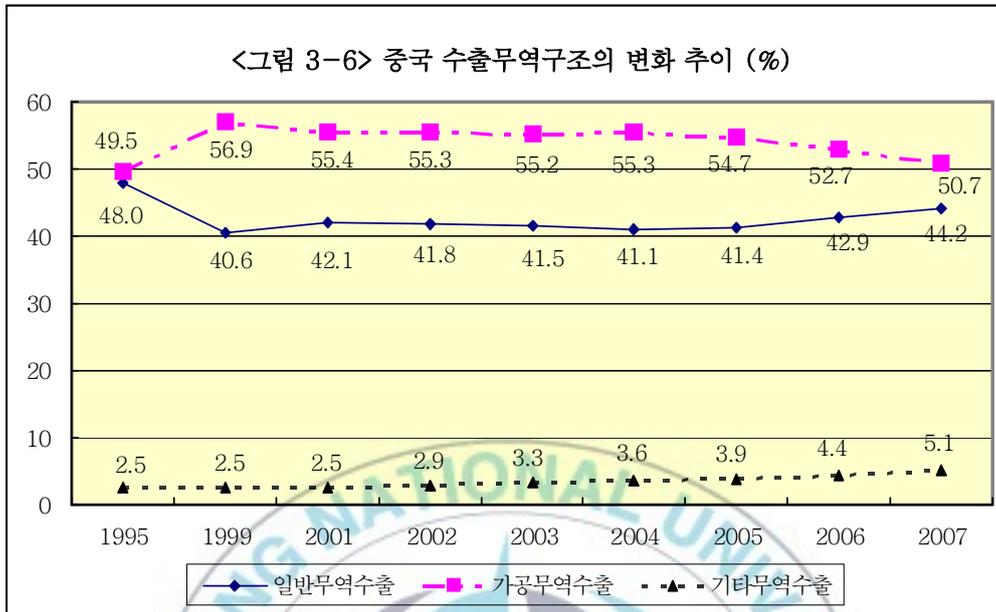
(2)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그림 3-6>과 <그림 3-7>은 WTO 가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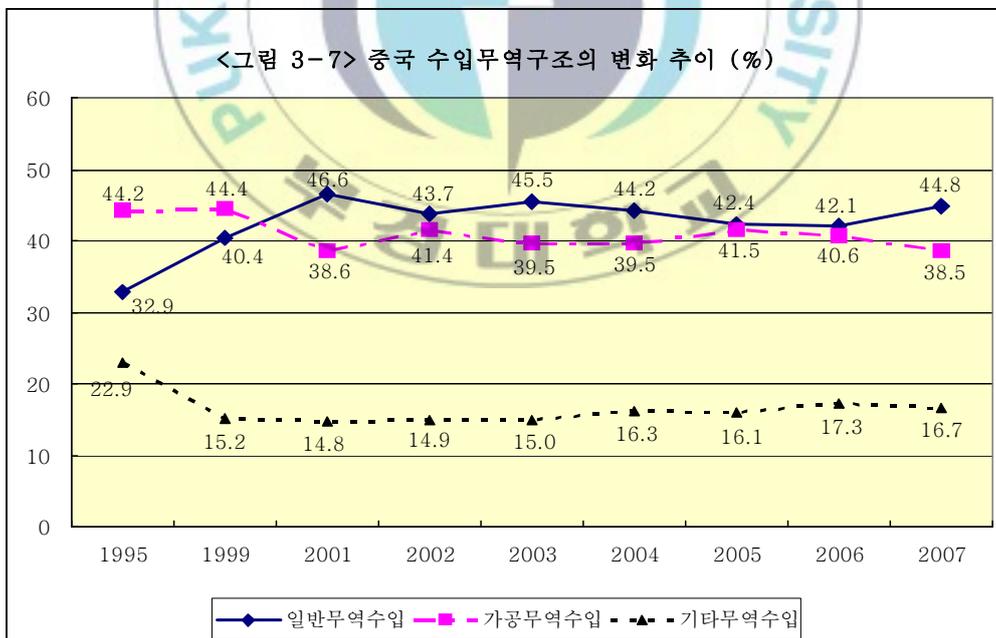
수출의 경우에는 무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감면, 또는 수입한 원자재 부품은 보세처리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부과되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이 1995년 이후 계속해서 일반무역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에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1999년 44.4%로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일반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WTO 가입 전후로 일반수입의 대상이었던 품목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WTO 가입 이전에는 일반수입 대상 품목의 관세를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였지만,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로 이제 이들 품목의 관세가 하락하여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30) 1995년 순위는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프랑스, (5) 유럽, (6) 이탈리아, (7) 캐나다, (8) 네덜란드, (9) 벨기에, (10) 중국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또한 가공무역은 개방초기 중국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환급이 철폐되었고 가공 무역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가공무역 중 내료가공(來料加工)³¹⁾의 보세반입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서 더 이상 내료가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진료가공(進料加工)³²⁾이 보세수입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일반무역으로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완제품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되어 이중세금부담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게 된 점에서 가공수입이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IV. WTO체제하의 관세인하 추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 중국 관세인하제도의 문제점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은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고 관련 법칙조약에 대하여 수정하였으며 중국의 대외개방과 국내외 경

31) 내료가공(來料加工)은 외국 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한 경우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중국 국내 업체가 외국 업체의 요구대로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수출하여 외국 업체가 동일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중국의 국내 업체는 외국 업체로부터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무역이다.

32) 진료가공(進料加工)은 중국의 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품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하는 무역방식이다. 다만 수입원자재, 부품은 가공하여 재수출될 완제품 또는 반제품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하다.

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

가. 관세율구조 측면의 문제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관세율구조의 조정은 전체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을 채용하였다. 즉 모든 품목의 관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비슷한 관세율 수준을 가지고 있다.

<표 4-1> 중국 및 일부 국가 농산품의 관세율(%)

제품 종류	중 국	미 국	일 본	유 럽	캐나다	말레이시아
알콜농도 80%이하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HS 22089090)	10	0	27	46	1	95
기타 뼈 없는 신선 또는 냉장한 소고기(HS 02013000)	12	262	40	215	26	0
냉동된 절단하지 않은 닭(HS 02071200)	0	2	12	32	238	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HS 04013000)	15	662	2201	113	241	0
요구르트(HS 04031000)	10	632	6201	69	238	10
버터(HS 04051000)	10	802	3001	68	300	5
치즈(HS 04069000)	12	422	30	120	246	10

기타 말린 완두 (피섬 새티법) (HS 07131090)	5	1	530	0	0	0
신선하거나 건조한 바나나(HS 08030000)	10	0	23	220	0	115
신선한 파인애플 (HS 08043000)	12	0	17	6	0	97
듀럼종의 밀 (쿼터 내/외) (HS 10011000)	1/65	2	2901	65	77	0
멥쌀(쿼터 내/외) (HS10061091)	1/65	0	9001	71	1	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쿼터 내/외) (HS11010000)	6/65	2	2001	44	33	0
탈각한 땅콩 (HS 12022000)	15	1322	470	0	0	5
사탕수수 (쿼터 내/외)(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 (HS 17011100)	15/50	902	1001	73	7	0
땅콩버터(HS 20081130)	30	1322	12	13	0	5
볶은 땅콩 (HS 20081120)	30	1322	21	11	0	5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마태를 기제한 조제품 (HS 21012000)	32	912	100	6	0	20
건조시킨 잎담배 (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HS 24011010)	10	350	0	5	0	350

잎담배로 만든 권련 (HS 24022000)	25	10	0	58	13	165
균질화한 담배 (HS 24022000)	57	310	30	75	5	150
정제한 올리브유 및 그 분획물 (HS 15099000)	10	0	0	60	0	0
파인애플 통조림 (HS 20082010)	15	1	30	25	0	58

자료 : ① 2008, 《중국수출입세칙》
 ② (UNCTAD, The Post Uruguay Round Tariff Environment for Developing Country Exports, TD/B/Com, 1/14, Geneva)

최근 중국은 원자재에 대해서 무관세율 또는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관세율을 부가하며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사구조를 가진 차등관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경사도”는 선명하지 않다.

<표 4-3>의 《중국수출입세칙》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퀴터 외의 밀, 멥쌀, 밀가루, 사탕수수 등의 제품의 관세율은 비교적 높고³³⁾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별 차이 없이 비슷하다. 현재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율 구조는 타 국가와 달리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표 4-3>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와 지역 농산품의 관세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낮은 평균관세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특정제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신선한 바나나, 신선한 파인애플, 멥쌀 등의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말린 완두, 밀

33) 퀴터 내의 밀, 멥쌀, 밀가루, 사탕수수의 것은 1%, 1%, 6%, 15%로 낮은 관세율을 정하였다.

가루 등의 농산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버터, 치즈, 요구르트, 탈각한 땅콩, 땅콩버터, 볶은 땅콩 등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262~1,322%로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원이 많지 않는 밀, 멥쌀, 밀가루, 사탕수수의 것 등의 농산품에 대해 100~9,001%로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 농산품 관세율이 0~2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및 과일과 관련 건조시킨 잎담배 (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균질화한 담배, 신선한 바나나, 신선한 과인애플 등의 제품에 대해 97~350%로 높은 관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차등관세율 지정을 통하여 미국 등의 국가에서 지역의 농산품 평균관세율을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시키면서 제품 및 산업에 대해 유효적인 보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거쳐 중국의 관세율제도는 최적화되고 평균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동시에 관세의 보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므로 현재 중국이 보호해야 할 제품 및 산업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08년에 실시한 《중국수출입세칙》 중에서 일부 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지만 수입량이 크지 않으므로 관세율구조상 산업의 보호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신발, 레그 가드와 관련 제품 및 부품(HS 64류)의 경우에는 10~24% 관세율로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이었다. 실제적으로 이 제품의 작년 수출액은 218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액은 6억 달러에 불과하여 경쟁력이 있으므로 높은 관세율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었다. 그리고 생수 및 음료수류(HS 2201~2202류)인 경우에는 관세율을 10~35%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 대해 직접투자 방식으로 수입량이 매우 적어 보호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평균관세율만 높아질 뿐이다.

나. 세칙분류 측면의 문제점

중국은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세목총수가 매우 적다. 중국의 2008년 수출입세칙은 총 97류 7,758개 세목에 불과하고 미국의 경우에 이미 1996년에 세목의 총수가 10,093개에 달하였다.³⁴⁾ 세목의 항목이 극히 적으면 제품에 대한 분류가 세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유 관련 제품(HS 0401~0402류)은 지방의 농도에 대해서만 분류하였고 우유의 종류(소젖, 양젖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또한 분류한 제품에 대한 해석이 상세하지 않다. 예를 들면 곡물류 제품 중 밀에 대해 듀럼종의 밀(HS 10011000)과 종자용의 밀(HS 10019010)로 분류되어 있다. 듀럼종의 밀은 밀의 물리적인 특징으로 분류가 되었고 종자용의 밀은 밀의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그런데 밀이 수입품으로 통관 수속을 할 때 밀의 물리적 특징과 용도를 다 갖고 있다면 분류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종이류 물품 중 “도포하지 아니한 중간 두께의 종이(기계공정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한한다) 1㎡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의 것(HS 4802550090)”과 “슈트상의 것으로서 1㎡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이 435mm초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변은 297mm를 초과하지 않는 것(HS 4802560090)”로 나누어 있다. 두 가지 종이는 두께와 면적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그런데 종이가 수입품으로 통관수속을 할 때 두께와 면적 등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으면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다.

상술한 문제는 수출입신고 시 수출입 업체가 제품에 관한 서술의 제한

34) Jiahuang Wu, "Tariff Policies and Measures in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p.5.

등으로 인해 분류착오가 생길 수 있고 납세의무자에게는 불공평대우 및 국가 관세수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관세징수 측면의 문제점

중국의 관세징수 표준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가세를 시행하고 있다. 단 보리로 양조하는 맥주 등 46 가지 품목의 수입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며 비디오캠코더 등 9 가지 품목에 대해 복합세를 적용하고 있다.³⁵⁾ 현행 관세징수표준은 비록 전의 단일한 증가세 적용보다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용 폭이 좁고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다.

현행 관세징수표준에서는 종량세 및 복합세 등 채용하는 폭이 좁다. 냉동 통닭류를 예를 들면 품목 간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종량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표준에 의거하여 증가세를 시행하고 있는 냉동 통닭류와 특징이 비슷한 냉동오리, 냉동거위 및 기타 냉동육류식품은 모두 종량세를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계절세, 선택세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범위가 매우 적다.

라. 관세법 체계의 문제점

관세법규는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과정에서 관세 자체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소비를 억제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관세율과 관세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국내물가의 안정과 수출지원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다.

35) 2006,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관한 조정”, 「중국해관총서」 제75호.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WTO 기준에 상응하는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법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선·정비하였다.

해관법은 1987년 제정 이후 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중국 관세제도의 기본구성을 확립하고 최고의 법적인 효율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규 관련 부분은 해관법 중 제5장 “관세”편뿐이다. 한국의 경우 관세법은 1946년 제정 시 총 5조에 불과하였다. 그 이후 2008년 제61차로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 관세법은 총 13장 329조를 포함하고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보세구역, 통관절차, 관세법처벌 등 관세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그래도 중국 현행 관세법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수출입관세조례는 관세율, 납세가격, 환급, 관세의 감면, 신고절차, 처벌 등 관세행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출입관세조례는 중국정부가 공포한 행정법규뿐이고 법적인 효율이 법보다 낮다. 그래서 중국은 관세법 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WTO체제하의 관세인하추세에 따른 중국의 대책

가. 관세율구조의 최적화

(1) 합리적인 관세율구조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국내외 경제

의 구조와 산업정책에 따라 관세율구조를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자재 → 중간재 → 완제품” 순으로 차등관세율을 실시하여 유효적인 국내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세율구조의 “경사도”는 선명하지 않아 선진국의 첨단방법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밖에 “적극적인 격려, 알맞은 개방, 알맞은 보호” 등의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 및 제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보호를 실시 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 혹은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경사도”가 선명한 차등관세율을 통하여 평균관세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산업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

구체적으로 완제품인 경우에는 중국이 경쟁력 높은 가전산업 및 섬유산업의 관세율을 낮추어도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평균관세율을 낮출 수 있게 보인다. 자동차산업 등 경쟁력이 낮은 자본집약형 산업에 대해서는 점차 보호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현재의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인하 폭이 비교적 작다. 농산품은 자연요소의 영향과 함께 수출보조금, 농업지원금이 폐지되어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당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이로 인해 “원자재 → 중간재 → 완제품”의 차등관세율구조를 실현시킨다.

그러나 중국은 단순히 선진국과 같은 차등관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1992년 중국이 관세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점차적인 차등관세율구조를 채용하였고 수입대체 일부 완제품을 통하여 대외적인 경제 효과와 이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관련 원자재 및 중간재의 생산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공업화가 되길 노력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측대로 달성하지 못한

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가전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쳐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관련 중간재산업이 비교적 낙후한 상태였고, 이것은 바로 완제품에 대해 높은 보호관세율을 실시하고 있었고 중간재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실시하여 일부 국내중간재가 국내수입중간재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욱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실제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차등관세율을 대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에 대해 관세율을 34.7%에서 18.9%로 점차 인하하고 있는데 중국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와 동시에 자동차부품의 평균관세율을 22.9%에서 10.4%로 인하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제품이 어느 산업의 완제품이 되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중간재가 되는 경우에는 복잡하게 뒤엉킨 순환관계가 형성되므로 이 경우 산업 간의 유효율 조정을 고려해야 된다.

(2) 산업간 관세율구조의 조정

한 제품이 어느 분야의 완제품과 다른 분야의 중간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의 관세율을 조정할 때 3가지 산업에 해당하는 제품을 비교하면 어느 분야가 제일 보호가 필요할지, 이에 근거하여 3가지 산업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면 한 제품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산업 혹은 보호가 필요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되고 결국 국내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70년대 철강 산업과 농산품에 대한 보호를 하였지만 농업기계의 관세율은 -6.9%로 역 보호효과를 초래하였다. 당시에 미국은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하여 높은 관세율을 정하였는데 철강은 농업기계의 중간재로서 농업기계에 대한 실효 보호율이 떨어지기를 초래하였다. 미국정

부는 농업기계에 대한 역 보호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수입관세율을 인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기계의 가격이 인상되게 되므로 농산품에 대한 보호효과는 떨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WTO 체제하의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과 농업지원금이 폐지되므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농산품에 대한 보호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를 희생하는 대가로 철강 산업과 농산품에 대한 유효적인 보호를 하였다.³⁶⁾

중국의 관세율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시키는 과정 중에 위에서 상술한 미국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거시적 국가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관세율을 채용해야 한다.

나. 합리적인 세목분류제도

중국은 세칙분류 측면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상품에 대한 분류 둘째, 세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셋째, 세칙분류에 대한 공문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에 대해 분류하는 원칙은 시행하고 있는 세칙에 기초하여 가공절차, 제품의 속성, 용도, 기능 등으로 분류한다. 이어서 관세관리 및 기타 감독 관리에 따라 다시 한 번 나뉜 세목에 대하여 분류한다. 세목의 분류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해관 전문 세목분류부서 구성인원에 대해 종합적 지식을 요구한다.

세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제품에 대한 특정서술 및 설명이 부족하므로 분류가 불명확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 번 세목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36) Chunhong Zhao(2003), "Impact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tariff reduction on imports", Xiamen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pp.31.

해석이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곡물류 제품 중 밀에서 듀럼종의 밀(HS 10011000)과 종자용의 밀(HS 10019010)을 분류한 불명확 문제의 예와 같이 듀럼종의 밀(HS 10011000)의 해석 중에서 “종자용 듀럼종의 밀은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종자용의 밀(HS 10019010)의 해석 중에서 “종자용 종자용의 밀(HS 10019010)을 포함된다.”라는 해석을 제시하면 세목 분류를 명확하고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종이류 (HS 4802550090)와 (HS 4802560090)인 경우 (HS 4802550090)의 해석 중에서 “선정할 때 종이의 두께 특징을 우선 선택”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해매지 않는다.

해관은 수출입상품에 대해 세목분류 시 세칙만 채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 해관홈페이지 또는 관련 잡지 등 간행물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공고(公告)도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된 공문서(公告)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만 품목이 종류별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통관신고인이 항상 “해관규정들이 자주 바뀌어서 통관신고하기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해관관리인원이 수시로 통보된 공고(公告)를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 다양한 관세징수표준의 실시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현행 관세징수표준은 종가세 외에 종량세 및 복합세 등을 채용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폭이 매우 좁다. 그래서 종가세를 사용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품목의 특징에 따라 종량세 및 복합세의 채용 폭을 확대시킨다.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한 냉동 육류는 냉동 통닭과 같이 종량세를 채용하고 보리로 양조하는 맥주와 같이 기타 조건이 맞는 주류에 대해 종량세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계절세 및 선택세를 활용한다. 계절세는 농산물과 천연제품 등 계

절에 따라 가격이 많이 변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한다.

선택세는 어느 물품에 대해 동시에 종가세 및 종량세 두 가지 세제(稅制)를 채용하고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징수의 재정수입 및 국내산업보호 등 목적에 따라 기본관세율보다 관세를 높게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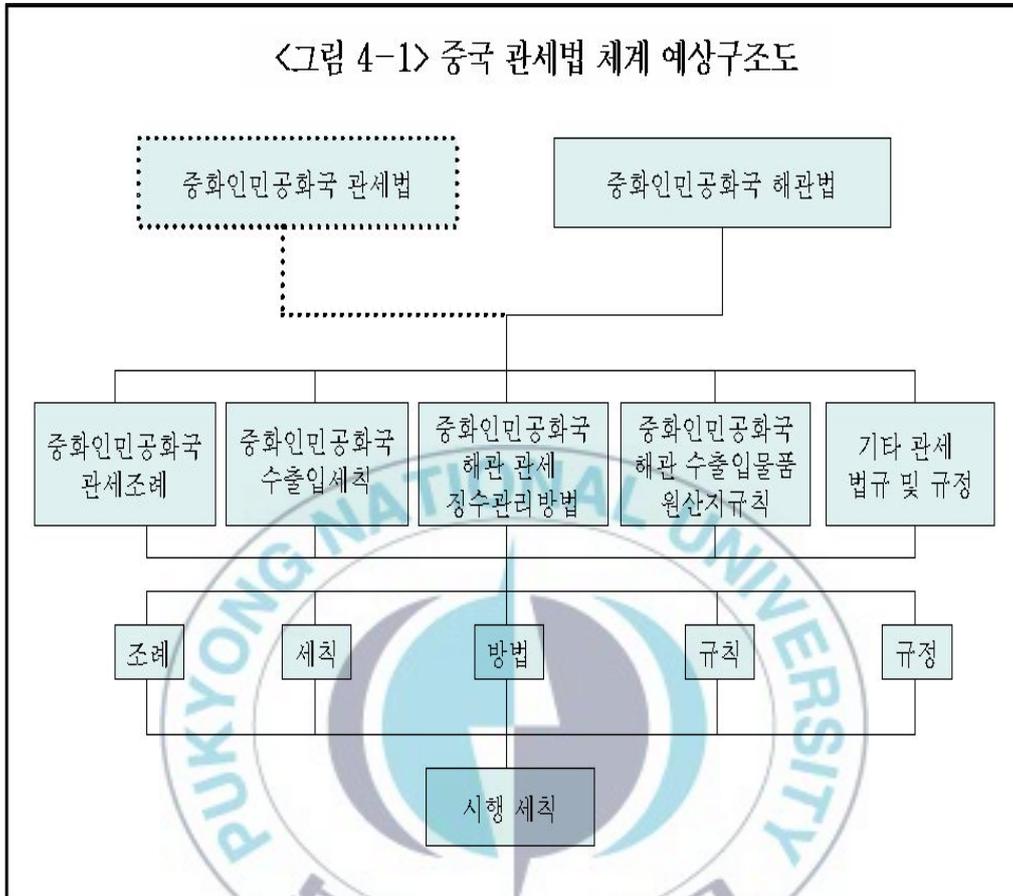
이렇게 징수하면 국내산업보호를 할 수 있고 불법상인(不法商人)이 가격을 속여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라. 관세법 체계의 확립과 보완

현행 해관법은 관세행정의 기본법이고 법적인 최고의 효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점이 새로운 관세법을 확립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관세법이나 보완한 해관법은 관세법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중국국무원(中國國務院)의 관세법시행령과 관세법, 동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이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법령상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4-1>참고)

<그림 4-1> 중국 관세법 체계 예상구조도



주: 점선 부분은 향후 중국 해관법(관세법) 체계의 확립 및 보완부분임.

V. 결 론

WTO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관세인하 분야이다. 회원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관세인하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언제부터 무관세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관세인하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관세인

하의 충격에 따른 취약한 산업과 이익을 얻는 산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진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게 되며 협상에 의한 일괄적인 관세인하를 하든지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명약관화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해야 할 일은 관세인하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고, 손실은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로 인한 개별산업이 받는 보호의 정도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느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광범위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시된 관세율 제도에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세인하가 GDP, 수출입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WTO협상에서의 관세인하 부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관세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주왕조 때 관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중대에 이르러서는 당나라 때 교통 및 대외적 무역이 발달하였으며, 처음으로 해상교역이 시작되었고 지금의 해관에 해당하는 시박사(市舶司)가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관세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송나라 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박규법(市舶規法)을 제정하였고 이는 수출입무역관리의 전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서는 청나라말기에 아편전쟁으로 시작되는 열강에 의한 중국침탈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자주적인 관세제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은 빼앗긴 관세자주권을 되찾게 되었으

며, 1978년 경제 개혁 대외 개방의 정책 노선을 선언 한 이후 중국의 관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외 개방정책을 관철하고 수출증대와 불필요한 제품의 수입억제와 필수품 수입을 권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 보호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대하는 목적을 극대화하였다. 1992년까지 계속 보호 위주의 관세법이 적용 되었다.

1992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W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세인하,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시작하였다. 중국은 몇 차례에 걸친 수입관세 조정을 통해 2001년 WTO 가입 당시에 평균관세율을 15.3%로 인하하였다.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WTO 회원국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해왔다.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 낮추었고 따라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새로운 수출입 세칙에 따라 2007년의 평균관세율은 2006년 9.9%에서 9.8%로 인하되었다.

2002년까지 중국 수출입세칙은 우대관세율과 일반관세율 두 가지뿐이었다.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2002년 중국의 수입세칙관세율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우대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중국은 관세율 인하로 단기간에 관세세수는 감소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투명성이 증대됨으로서 밀수와 부정부패도 상당 폭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혜국대우와 일반관세 특혜를 받게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로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체제에서의 시장기능 확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개혁을 가

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관세인하와 GDP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나듯이 중국은 WTO 가입 때 경제규모가 세계 6위권의 생산규모를 가졌으나 2007년에는 미국, 일본의 뒤를 이은 세계 3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2040년 중국이 총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었고 2050년에는 중국 총 GDP는 44,074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업구조 측면의 관세 인하율을 보면 1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농산품의 우세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산업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여 2006년에는 48.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낙후한 상태이다.

관세인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대폭적으로 성장하였다. 2002년 대외무역총액은 6,208억 달러에서 2007년 21,73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 중국 수출입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원자재 부품의 수입은 보세처리가 된다.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 혜택 등을 받고 있으며 가공무역이 일반무역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 대외 무역량은 50.7%로 총 수출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환급이 철폐되고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일반무역 수입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인하가 GDP, 수출입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37) 김성순(2004), "중국의 WTO가입 이후 무역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5권 제1호, pp.7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관세율 구조가 원자재에 대해 무관세율 또는 저관세율로 적용되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관세율을 부가하며 최종완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사구조를 가진 차등관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사도”는 선명하지 않았고 중국의 세목총수가 매우 적고 분류한 제품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지 않는 등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관세징수부분에서 중국이 종가세를 주로로 종량세, 복합세, 계절세 및 선택세 등의 세제(稅制)와 함께 채용하고 있지만 종가세 외의 세제(稅制)는 사용 폭이 좁다. 그리고 관세법 체계의 경우에는 WTO 가입 이후 기준에 따라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관세법규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최고의 법적인 효율을 갖고 있는 관세법은 해관법 중 제5장 “관세”편뿐이다. 그래서 관세법 체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산업별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구조가 불분명하고 세목총수가 적고 해석이 불명확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산업별로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등의 최적 관세율을 결정하여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생산 및 수출의 증대로 GDP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논점은 중국의 불명확한 관세율구조에 대해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 차등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선진국의 첨단방법을 참고로 하여 중국에 알맞은 합리적 “경사도”의 차등관세율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만약 한 제품이 어느 산업의 완제품으로 나오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중간재가 되는 경우 산업 간의 유효율 조정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목총수가 작고 해석이 불명확한 문제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세밀한 분류, 세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세칙 분류에 대한 공문서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크게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징수 측면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관세징수표준의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관세법 체계의 문제에 대해 현행 해관법을 기초로 새로운 관세법을 확립하거나 시행하고 있던 해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중국의 GDP, 산업별 구조 및 수출입 등의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관세율 구조 및 세칙분류 등의 문제에 대해 논술했지만 국가 간의 산업별무역 및 경쟁력을 비교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단행본

박대위(2007), 「무역개론」, 박영사.

박종수(2004), 「국제통상론」, 박영사.

윤광운·신정환(2000), 「관세법」, 삼영사.

홍인기(2004),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정보화」, 박영사.

논문

장인수(2007), "GATT/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국제통상연구」 12권 3호.

김중수(2003),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체계 -정책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김용대(2005),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관세인하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김성순(2003), "중국의 WTO가입 이후 무역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5권 1호.

김종현(2003),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대외무역 정책의 경향", 「중국학협회」 한국동북아 논총 제10집.

노희훈(2000),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문준조(2001), "중국의 WTO 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박외영(2005), "중국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서 위(2006), "중국 WTO 가입 이후 통상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논문.

- 손성문·최성일(2003),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8권 제2호.
- 양평섭(2000),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대외경제정책원」.
- 오웅탁·정인교(1997),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 - 중국관세인하의 효과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 외교통상부(2001), "중국의 WTO 가입반 보고서 : 주요 내용 및 평가".
- 유진석(2001), "중국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유진석(1999),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유자령(2005),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FTA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어대학교」 석사논문.
- 이원근(2002), "중국에 있어서 중·근대 관세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무역학회」 국제무역연구 8권 1호.
- 이상옥(2007), "중국 관세정책의 정치적 의미",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8권 4호.
- 이남주(2002), "중국의 WTO 가입과 개방형경제의 발전", 「성공회대학논총」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제15호.
- 전무춘(2003),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 전재욱(1999), "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재욱·박상수(200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2001),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정재호(2003), "WTO/DDA 협상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 재정포럼, 제82호, 「한국조세연구원」.
- 조현준(1998), "21세기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 가능성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주경제 1-2월호.

- 진 평(2006), "중국 수입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
논문.
- 최기선(2003), "중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와 한국 경제협력 방안", 「서강대학
교」 석사논문.
- 최낙균(1993), "UR이후 저 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최의현(2005),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5권 단일호.
- 최수웅(2003), "중국의 WTO 가입이 대내외경제관계에 미칠 영향",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 최낙균(2001), "WTO 뉴라운드 협상의제별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WTO 협동연구시리즈.
- 최은영(1995), "중국의 GATT/WTO 가입협상의 진행과 그 전망", 「제일경제연
구」 제10집 10호.
- 한상현(2001),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창
업정보학회지 제4권 제1호.
- 현대경제연구원(1999),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대응 전략".
- 황희정(2007), "한국과 중국 FTA의 경제효과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국외문헌 >

- Chunhong Zhao(2003), "Impact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tariff reduction
on imports", Xiamen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 Fu Xu(2005), "WTO Rules and China's Trade Policies", Tianjin Nankai
University Press.
- Fuguang Deng and Shikai Jin(2003), "Thinking on Improving China's Tariff
System", Economy of the SAR.
- Hailian Li(2007),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s Duty-free
Mechanism", Foreign Trade and Economic University,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3, No. 2.

- Hanjun Hu(2004), "WTO and China's Foreign Trade".
- Huimin Hong and Limei Chen(1999),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Reform of China's tariff system", Financial Research, No. 11.
- Jiahuang Wu, "Tariff Policies and Measures in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 Jianzhi Zhang(2004), "A Research on China's current tariff policies and future adjustments ", Jilin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 Li Cao(2007), "A Study On Consummation of China's Tariffs Legal System under WTO Framework",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s degree thesis.
- Mengzhou Xu(2005), "Tax Law", Renmin University Press.
- Niu Wen(2002), "China's Tariff Reduction", the People's Daily.
- Ping Jiang(2007), "Review on History of Modern China's resumption of sovereignty over tariff ", Anhui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 Ping Sheng(2001), "Memorabilia of China's accession to WTO ", People's Daily, 7th edition, Nov.19.
- Qing Ye(1996), "Single and Double-pumping System in the Yuan Dynasty: the Origin of China's tariff protection policy".
- Qingtao Tang(2003), "Thinking, Analysis and Prospects on Tariffs Legal System".
- Rongcai Hu(2001), "Three major changes in China's Tariff System", Shenyang Evening News.
- Shuizhou Qiao(2003), " A Study on the history of tariff ", Journal of North China Institute of Technology (Social Science), Vol.19, No. 4.
- Tong Mo(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tariff liberalization in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 Xuhong Li(2001), "China's Tariff System: How to Adjust the Post-WTO Accession", Fujian Tax.
- Yi Zhao, "A Study On China's tariff autonom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 Yingxin He(2002), "A Study On Consummation of China's Tariff System after Accession to WTO", Journal of Sichuan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Yinpin Yin(1997), "A Study On China's two-way tariff structure optimization", Southwe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issues.

Yong Li(2000), "A Study on China's Tariff Adjustment and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Tax and Economy.

Zhulian Hu(2005), "Impact of Tariff Changes on the Economy", Economics and Management Forum, China Science and Technology, No. 9.

Zhuye Pei(2000), "A Study On the Reform of China's Tariff System", Foreign Trade and Economic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1) "Protocol of People's Republic of China's accession to WTO "

< 웹 사이트 >

<http://www.chinacustomsstat.com> , 중국해관통계 웹 사이트

<http://www.china-customs.com> , 중국해관종합정보 웹 사이트

<http://www.comtrade.un.org> , UN COMTRADE 웹 사이트

<http://www.customslawyer.cn> , 중국해관변호사 웹 사이트

<http://www.customs.gov.cn> , 중국해관 웹 사이트

<http://www.custrade.com>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웹 사이트

<http://www.globalwindow.org> , 한국무역투자정보포털 웹 사이트

<http://www.imf.org> , 국제통화기금 웹 사이트

<http://www.kandc.biz> , 중국무역 중국투자 중국비즈니스의 정보망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KITA) 웹 사이트

<http://www.koreaexim.go.kr> , 한국수출입은행 웹 사이트

<http://www.mofat.go.kr> , 중국세관통계 웹 사이트

<http://www.stats.gov.cn> , 중국국가통계국 웹 사이트

<http://web.worldbank.org> , The World Bank 웹 사이트

<http://www.xinhuanet.com> , 중국 웹 사이트